

- 2024년 재난위험감시 CCTV 유지보수 -

# 과 업 지 시 서

2023. 12.

하 동 군  
안 전 총 괄 과

# 목 차

## 제 I 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입찰참가자격 및 특수조건)

## 제 II 장 유지보수

- 제4조(유지보수 수행기준)
- 제5조(유지보수 범위)
- 제6조(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제7조(유지보수요원)
- 제8조(유지보수체계)
- 제9조(유지보수료)

## 제 III 장 점검 및 지원

- 제10조(정비점검)
- 제11조(기술 등의 지원)

## 제 IV 장 장애조치

- 제12조(장애처리)
- 제13조(장비의 수리 및 예비부품 확보)
- 제14조(장애조치 시간산정 및 지연배상금)

## 제 V 장 각종 부담 및 책임이행

- 제15조(안전관리책임)
- 제16조(손해배상 및 책임)
- 제17조(계약의 해지)
- 제18조(보안책임)
- 제19조(책임이행)
- 제20조(관할법원)
- 제21조(기타사항)

## 제 VI 장 기술자격 보유 및 각종 서류의 제출

- 제22조(기술자격 보유)
- 제23조(제출서류)

## 제 I 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군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알프스 하동】 실현을 위해 설치한 재난위험감시 CCTV의 24시간 동안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 점검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항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동군청 (이하 “하동군”이라 한다)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 ① 유지보수 : 장애 예방·복구, 각종 시스템·S/W의 관리, 운영환경 개선, 재해예방, 관련 기술의 지원 및 관련부품의 교체 등 관제시스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② 유지보수요원 :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동군”의 재난위험감시 CCTV 운영 유지보수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이미 “하동군”에 통보되어 근무하는 자와 근무대기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③ 유지보수료 : 이 계약에 관한 과업내용 이행을 위한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부품비,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기타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 ④ 장애 : 현장 및 관제 시스템의 고장 또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우려되는 정도의 기능저하를 말한다.

### 제3조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하동군**내에 있는 업체로서,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⑤ 현장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연고소작업차량(1톤 이상) 또는 트럭 탑재형 크레인(1톤 이상)을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증빙서류 : 차량등록증 또는 연간 임차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⑥ **CCTV 주요 장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사 및 공급사의 기술지원 협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II장 유지보수

### 제4조 (유지보수 수행기준)

- ① 재난위험감시 CCTV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재 상태대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② 재난위험감시 CCTV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한다.
- ③ 장애예방을 위한 종합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⑤ 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는 신속한 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CCTV 현장부분 또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하동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재난위험감시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및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하동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⑦ CCTV 장비 및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하동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⑧ 재난위험감시 CCTV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현재 상태대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인력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⑨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기관의 예방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실시일자는 “하동군”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 (유지보수 범위)

- ① 현장시스템 및 서버시스템에 대하여 H/W장비 일체의 유지보수 및 S/W의 유지보수(장비내역 붙임 1)
- ①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문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유지보수 일체 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 ② H/W, 운영체제, 응용S/W 및 데이터의 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 ④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동군”이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 ⑤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및 케이블포설 등 지원
- ⑥ “하동군”이 제공하는 소모품의 교체작업 수행
- ⑦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관리에 따른 기술상담
- ⑧ 유지보수 대상 이외의 “하동군”에서 운영되는 재난위험감시 CCTV에 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 1차적인 문제확인 및 설치업체에 수리요청 등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

### 제6조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2. 12. 31.까지로 한다.
-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실시하며 “하동군” 이에 따른 실비를 지급 한다.
- ③ 유지보수는 연중 24시간으로 하며 근무자는 “하동군”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 제7조 (유지보수요원)

- ① 유지보수 요원 및 차량지원
  - 1. 기술인력 : 총 2명

○ 현장의 장애처리를 위한 CCTV 기술자 2인이 항상 지원을 해야 한다.

## 2. 유지보수용 차량 1대 상시 지원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지보수용 차량(크레인 1대)을 관내에 배치해야 한다.

○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② 유지보수요원은 “하동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③ 유지보수요원은 “하동균”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 10일 전에 “하동균”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하동균”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 제8조 (유지보수체계)

- ①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한다.
- ② 유지보수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응소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하동균”이 운영하는 각종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유지보수가 종료되고 차기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3일(평일기준)간 재난위험감시용 CCTV 운영전반에 대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유지보수료)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유지보수료를 3개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하동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하동균”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보수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

### 제Ⅲ장 점검 및 지원

#### 제10조 (정비점검)

- ① “하동군”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정비점검을 하여야 하고, 점검결과를 “하동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하동군”은 사전 장애예방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정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있으며,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수시점검은 필요시 “하동군”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④ 정기점검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하동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하동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요원을 “하동군”의 시스템 설치장소에 출장시켜 유지보수를 담당할 장비에 대하여 재가동, 고장수리,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하동군”에 확인 받아야 한다.
- ⑦ “계약상대자”는 정비점검결과 시스템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정기점검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점검에 따른 인력 및 제반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⑨ 모든 점검 후에는 “계약상대자”는 “하동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기술 등의 지원)

- ①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하동군”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하동군”의 사정에 의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하동군”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시험운영을 지원하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③ 원인불명의 장애 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품목중 공급사(제조사)의 유지보수 서비스(기술 지원 협약서)를 포함하여 공급토록 하여야 한다.

### 제IV장 장애조치

#### 제12조 (장애처리)

-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유지관리체계는 연중 24시간 재난관제센터 및 각 지역 CCTV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하동군”으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조치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조치완료 하여 장애처리 조치결과를 “하동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유형	구분	근무시간		근무시간 외	
		응소시간	복구완료시간	응소시간	복구완료시간
H/W, 현장 S/W 장애시		2	4	4	6
폴 등 중대한 장애시		2	8	4	12

※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근무시간을 말하며, 복구완료시간은 응소시간이 포함됨.

- ④.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고 4시간 이내에 해당 시스템의 보수 및 복구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하동군”이 인정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보수 및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복구시간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기기를 대체하는 등 CCTV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 (장비의 수리 및 예비부품 확보)

- ①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② 장애처리 시 고장수리, 설비이동, 카메라 촬영 방해물 제거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한다.
- ③ “하동군”의 요청에 의한 성능개선, 부품증설, 노후교체, 대규모 이설에 소요되



는 비용은 “하동군”이 부담하나, 그 이외의 A/S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 및 인건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하동군”의 감독하에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회선 및 케이블 등이 노후화되어 성능이 저하되면 “계약상대자” 점검 후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한다.
- ⑥ 파손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명확한 경우 구상권으로 수리비용을 충당하고 그 외의 경우는 “하동군”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⑦ 전원공급 설비의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 1. 점검 및 장애시 긴급조치와 구성도, 배선도, 전락사용량 현황 등의 관리 등
  - 2. 차단기 및 배선 관리 등
- ⑧ “계약상대자”는 중요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동군”이 요구하는 중요한 부품은 “하동군”이 요구하는 장소에 예비품을 비치하여, 장애 시 신속히 교체토록 한다.
- ⑨ 장애로 인해 교체한 부품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하동군”에게 있다.

#### 제14조 (장애조치 시간산정 및 지연배상금)

- ①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가산한다.
- ②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한다.
- ③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조치가 근무시간외까지 연장되어 조치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해석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제12조의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장애처리지연 지연배상금 = (월 유지보수금액 × 2.5/1000)/24 × 복구지연시간
- ⑤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⑥ 위 지연배상금은 월 유지보수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⑦ 기타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드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하동군”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V장 각종 부담 및 책임이행

### 제15조 (안전관리책임)

-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유지보수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제16조 (손해배상 및 책임)

-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동군”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하동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작업 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시스템 이상 등으로 “하동군”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대책강구 및 원인규명의 자료를 “하동군”이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손해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동군”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 (계약의 해지)

- ① “하동군” 또는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 ③ “하동군”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하동군”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하동군”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동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8조 (보안책임)

-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계약상대자”는 “하동군”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제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하동군”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 ④ “하동군”과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1항에 따라 [붙임6]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⑥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출입 시 “하동군”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9조 (책임 이행)

- ①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1. 계약자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2.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제20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하동군”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동군”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제21조 (기타사항)

- ①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 용역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④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법령 및 조례등에도 없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동군”과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 VI 장 기술자격 보유 및 각종 서류의 제출

### 제22조 (기술자격 보유)

- ① 본 사업의 유지보수 인력은 초급이상기술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 제23조 (제출서류)

- ① “계약상대자”는 세부사항을 하동군과 사전 협의하여 유지보수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포함한 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 포함)를 “하동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용역수행계획서 1부.
  - 2. 유지보수 인력 증명서류 2부
    - 가. 재직증명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 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신원조사용)
  - 3. 보안서약서(유지보수 인력, 대표자) 2부
  - 4.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2부
-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완료시 아래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완료계 2부
  - 2. 정기점검 보고서 및 수시점검 보고서 1부
    - ※ 보고서는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보안확약서

- 붙임 1. 유지보수 장비 내역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3. 보안서약서(참여자용)
  4. 보안확약서
  5. 신원진술서
  6. 비밀유지계약서

【붙임1】 유지보수 장비 내역

1. 내역

지구명 (설치장소)	시설별	설치년도	수 량	단 위	단 가
하동읍	송림공원	2015.07	1	식	8,192,000
	하동정수장	2016.05	1	식	6,894,000
	흥룡교	2017.04	1	식	11,327,000
	신기배수장	2017.04	1	식	11,327,000
	동해배수장	2020.07	1	식	3,495,200
화개면	화개교	2022.07	1	식	8,192,000
	신흥1교	2016.05	1	식	11,924,000
	대성1교	2016.05	1	식	11,924,000
	정금교	2016.05	1	식	11,924,000
	부춘교	2016.05	1	식	11,924,000
	범왕교	2017.04	1	식	11,327,000
	지리산역사관 입구	2018.06	1	식	8,758,000
	칠불사입구	2018.06	1	식	8,758,000
	남도대교	2020.07	1	식	3,495,200
	지리산역사관옥상	2018.01	1	식	8,758,000
악양면	악양교	2022.07	1	식	8,192,000
	증대교	2016.05	1	식	

					11,924,000
	축지교	2016.05	1	식	11,924,000
	등촌교	2017.04	1	식	11,327,000
	평사리공원	2018.06	1	식	8,758,000
적량면	고절리	2016.05	1	식	11,924,000
	두전교	2022.07	1	식	11,924,000
	용소보	2016.05	1	식	11,924,000
	명천교	2017.04	1	식	11,327,000
횡천면	횡천교	2016.05	1	식	6,894,000
	온동교	2016.05	1	식	11,924,000
고전면	고남교회앞(고남교)	2015.07	1	식	8,192,000
	고하교	2016.05	1	식	11,924,000
	고전교	2017.04	1	식	11,327,000
	계천배수장	2017.04	1	식	11,327,000
진교면	금양교	2016.05	1	식	11,924,000
	송원교	2017.04	1	식	11,327,000
	양포방파재	2018.06	1	식	8,758,000
양보면	운암사거리	2016.05	1	식	11,924,000
	우복리(적설량감시)	2022.07	1	식	11,924,000
청암면	금남교	2022.07	1	식	8,192,000
	명호교	2016.05	1	식	11,924,000
	회남교	2016.05	1	식	

					11,924,000
	시루봉교	2016.05	1	식	11,924,000
	큰돌펜션앞	2016.05	1	식	11,924,000
	평촌교	2017.04	1	식	11,327,000
	삼신봉삼거리	2017.04	1	식	11,327,000
	삼신봉터널	2018.06	1	식	8,758,000
	청학동주차장	2016.01	1	식	11,924,000
옥종면	창촌교	2015.07	1	식	8,192,000
	회신삼거리	2016.05	1	식	11,924,000
	안양골(적설량감시)	2016.12	1	식	11,924,000
	백토버스정류장(적설량감시)	2016.12	1	식	11,924,000
	두양2교	2017.04	1	식	11,327,000
	병천교	2017.04	1	식	11,327,000
	문암교	2017.04	1	식	11,327,000
	옥종면사무소옥상	2017.04	1	식	11,327,000
금남면	중평항	2017.04	1	식	11,327,000
	노량항	2017.04	1	식	11,327,000
	계천배수장	2017.04	1	식	11,327,000
	구노량 방파재	2018.06	1	식	8,758,000
금성면	연막마을	2017.04	1	식	11,327,000
	명선마을	2018.06	1	식	8,758,000
북천면	대야교	2017.04	1	식	11,327,000







##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4년 재난위험감시 CCTV 유지보수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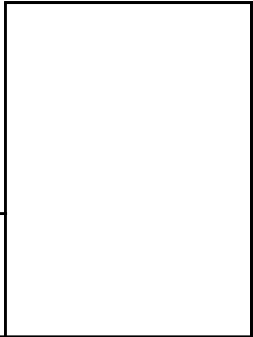
성 명 :

(서명)

하동군수 귀하

【붙임7】 신원진술서

# 신 원 진 술 서(약식)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등록기준지						연 락 처	자택 :
주소							직장 :
직장		직장명 : 소재지 :					휴대폰 :
신장		cm	체중	kg	혈액형	형	
병역	군별	병과	최종계급	군번	기간	미필사유	
학력	학교명		기간		전공학과	학위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경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간		직책 (직급)	상별관계 (일자)	
			. . . ~ . . .				
			. . . ~ . . .				
			. . . ~ . . .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p>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p>							



**【붙임8】 비밀유지계약서**

#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하동군이 2022년 재난위험감시 CCTV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계약대상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하동군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대상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계약대상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 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누출’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하동군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하동군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하동군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퇴근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하동군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하동군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협약서 제출

## 제4조 【정보의 회수】

“계약대상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하동군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용역사업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하동군(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원활한 실시간 관제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sup>1)</sup>

1. CCTV의 영상정보에 속한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업무 예시 : CCTV유지보수 용역,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홍보 안내 등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sup>2)</sup>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을”또는“을”의 임직원 기타“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을”또는“을”의 임직원 기타“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갑”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갑”은 이를“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갑”과“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위탁기관 : 하동군  
 주 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대 표 자 : 하 동 군 수 (인)

**을**  
 수탁기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집·이용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공·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유출사실시 정보주체자에게 미통지 (제34조)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제35조)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4년 재난위험감시 CCTV 유지보수용역
- 발 주 기 관 : 하동군
- 공 급 사 : 렉스젠(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2024년 재난위험감시 CCTV 유지보수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을 낙찰자에게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기술의 필요로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기술·품질 등의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공급사의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기술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일천만원(부가세포함) 이 내로 한다.

제4조(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공급사는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3년 12월 일

발 주 기 관 : 하 동 군 (인)

공 급 사 : 렉스젠(주)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4년 재난위험감시 CCTV 유지보수용역
- 발 주 기 관 : 하동군
- 공 급 사 : 렉스젠(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2024년 재난위험감시 CCTV 유지보수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을 낙찰자에게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기술의 필요로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기술·품질 등의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공급사의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기술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일천만원(부가세포함) 이 내로 한다.

제4조(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공급사는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3년 12월 일

발 주 기 관 : 하 동 군 (인)

공 급 사 : 렉스젠(주)

